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763
------------	-----

2015년 12월 17일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- 2015.10.22 남 창진 의원 발의(찬성자 11명)(2015.10.27. 회부)

2. 제안이유

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(안 제2조, 제 4조, 제6조, 제8조, 제 9조, 제 14조)

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나. 기 타 : 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첨

5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정책적 쟁점사항은 없으나, “제안하고자 하는 사람” 등을 “제안하려는 자” 등으로 조정하는 등 일부 자구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어려운 법률 용어의 순화,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,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, 명확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 나감으로써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을 보다 쉽게 하려는 것임.